문서번호	자치행정과-4950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 ⊙

★주무관	민방위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고진석	최만순	代문광선	03/24 소판수	
협조				

2015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민 방 위

성 동 구

(자치행정과)

2015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Ⅰ 추 진 배 경

○ 민방위의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민방위 수행능력 강화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

○ 지역(직장)의 여건에 맞춘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우수사례 발굴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Ⅱ 법 적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검열)**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검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9조(검열)**

○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검열 실시

Ⅲ 검열 실시 계획

1 기본방향

○ 2014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한 검열 실시

○ 일상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피검열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시

○ 검열결과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로 검열의 실효성 확보

2 세부계획

(1) 검열개요

○ 기 간 : 2015. 4. 1. ~ 4. 24.

- 지역민방위대 :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검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 직장민방위대 : 직장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원하는 시기에 실시

○ 대 상 : 지역·직장민방위대 전체 20% 수준

- 지역민방위대 : 전체의 20% 수준
- 직장민방위대 : 전체의 20% 수준

(시·구 합동검열 : 100인 이상 직장대 대상 ⇒ 서울도시철도공사)

※ 민방위대 검열대상 확대 (2014년 10% → 20%)

○ 주 관 : 자치행정과장

(2) 검열방법

① 검열기관 선정

- 신설기업체 등 신규편성 민방위대
- 최근 2년간 검열결과 경고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민방위대
- 재난 및 대공 취약지역 민방위대
-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우수사례가 있는 민방위대
- 기타 검열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대

② 검열내용

- (편성 및 동원) 편성누락, 편성제외자, 비상연락망 정비
- (시설·장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방독면, 화생방 분대장비
- (교육) 교육실태, 계획대비 실적 등 운영전반
-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등 훈련 참여실태, 비상소집 응소현황, 임무숙지 상태

③ 2015년도 정기검열대상

◇ 지역민방위대

연번	동 명	민방위 통대수	검열 일정	비 고
1	금호1가동	27	2015. 4. 9. (목)	
2	옥 수 동	33	2015. 4. 10. (금)	
3	성수2가1동	34	2015. 4. 20. (월)	
계		94		

◇ 직장민방위대

연번	직 장 명	대원수	검열방법	일 시	비 고
1	서울도시철도공사	115	직접검열	4. 17. (금)	시·구합동검열
2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	94	직접검열	4. 14. (화)	현장검열
3	예스코	55	직접검열	4. 14. (화)	
4	서울시설공단	70	직접검열	4. 15. (수)	
5	한국전력 성동전력소	13	자율검열	4. 1.(수) ~ 4. 24.(목) 위 기간 중 점검일 자율 선정	서면검열
6	동부수도사업소	10	자율검열		
7	한양대 사범대학 부속고	9	자율검열		
8	한양여자대학	8	자율검열		
9	중랑물재생센터	6	자율검열		
10	성수고등학교	5	자율검열		
11	서울방송고등학교	5	자율검열		
12	무학여자고등학교	4	자율검열		
계		394			

(3) 검열절차

① 검열단 편성 및 교육

- **검열단 편성**
  - ▪ 단장(자치행정과장), 검열관(업무담당자)
- **사전교육**
  - ▪ 자치행정과장(민방위팀장) 책임 하 검열관수칙, 방법, 검열항목 등

② **검열실시 및 일정 통보** (구 → 지역, 직장민방위대장)

- 현장 출장 검열 및 서면평가 병행

※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 검열 기간내 서면평가

(4) 검열 평정방법(검열규정 제10조의2항)

◇ 최우수(4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 또는 우수 사례가 있을 경우
◇ 우수(3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 보통(2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 미흡(1점)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5) 검열결과 처리

◇ 우수(총 평점 80점이상) ◇ 보통(총 평점 60~79점)
◇ 경고(총 평점 40~59점) ◇ 불량(꽁 평점 40점미만)
* 검열결과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민방위대는 경고조치
* 40점 미만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검열
* 재검열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개편명령 또는 경고조치

○ 검열결과 판정에 대하여 특별검열실시

(6) 검열결과 통보 (지역, 직장민방위대장)

- 우수, 경고대상, 재검열등 해당 민방위대에 통보

【우 수】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 유공공무원 표창
【경 고】현지시정 후 서면에 의한 경고
【재검열】
- 3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부여 후 재 검열
  ※ 재검열시 정기검열과 동일한 검열기관 검열실시
  ※ 필요시 상급기관과의 합동 재검열 실시
- 재검열 결과 60점미만의 경우
  ■지역대 : 동장 경고조치
  ■직장대 : 시정조치, 개편명령, 민방위 시범훈련대상 지정 등

Ⅳ 행 정 사 항

○ 합동점검 준비 철저 및 점검항목 사전점검(붙임2참조)

○ 정기검열 결과 필요시 특별검열 별도시행 예정

○ 검열 제외동(14개동) 및 자체검열대상 직장대는 점검표에 의거 자체적으로 검열 후 결과보고(붙임1 양식) 및 점검표(붙임2 양식) 제출 : 2015. 4. 24(금) 기한

※ 현장점검사진 3매 이상 반드시 첨부

붙임 1

2015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

검열반장	소속 :	직급 :	성명 :	㊞
검 열 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검 열 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검 열 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귀하

민방위대 검열 결과(○○지역대/○○직장대)

1. 검열 개요

가. 검열기간 : ‘15. . ~ ’15. . (일간)

나. 검열대상 : [ ]지역(직장) 민방위대

2. 검열결과 평가

가. 총평

○

나. 잘된 점

○

다. 미흡한 점

○

라. 우수사례

○

마. 건의사항

○

3.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

○

4. 검열평점 :

5. 기타(제도개선 방안 등)

○

6. 관련 증빙서류 (현장 점검 사진 등)

○

붙임 2

2015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지역)

(민방위대 명 : ○○민방위대)

분야별	검 열 기 준	배점	평점	평가의견
총 계 (100)		100		
편성·운영 (24)	• **민방위대 편성·운영** - 편성 누락 및 이중편성 여부, 편성제외자 관리 실태 - 20인 미만 소규모 민방위대 편성실태 - 민방위대 자체민방위계획 수립·추진 여부 • **자원관리** - 신분변동자 등 이동자원 정리 상태 - 민방위대원 소속 및 임무고지 여부	12 (4) (4) (4) 12 (6) (6)		
교 육 (20)	• **교육의 충실성** - 자체교육 인정자 통신(서면)교육 이행실태 - 교육생 편의제공 이행실태(야간·주말교육 확대 등)	20 (10) (10)		
동 원 (20)	• **동원 대비태세 및 활동 적절성** - 비상연락망 정비(10명 무작위 전화 확인) - 유관기관 공조 및 지원체제 구축(연2회 확인여부)	20 (10) (10)		
훈 련 (20)	• **비상소집 훈련** - 대원의 소속 및 임무숙지 상태 - 비상소집 후 교육훈련 실시 여부 • **민방공 대피훈련** - 민간유도요원의 활용여부(조 편성 및 연락망 확인) - 적법절차에 따른 훈련 이행여부 • **재난훈련** - 시군구 단위 훈련참여 실태(계획대비 실적)	8 (4) (4) 8 (4) (4) 4 (4)		
시설·장비 (16)	• **비상급수시설 관리** - 정기점검 및 수질관리상태 여부(상, 중, 하) • **비상대피시설의 관리 실태** - 유지관리, 청소상태 등 청결여부 • **화생방 장비관리** - 방독면 관리 실태 - 방독면 자체확보(시군구 자체예산) 실적 - 화생방분대 장비확보	4 (4) 4 (4) 8 (2) (2) (4)		
수범 사례 (가산점)	• **수범 사례** -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어서 본받아 배울만한 사례	3		
건의 사항	-			

<검열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검열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귀하

< 점검표 작성 요령 >

① 각 평정요소(항목)는 '최우수'·'우수'·'보통' 및 '미흡'의 4단계로 평가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점	2점	1.5점	1점	0.5점
배점 4점	4점	3점	2점	1점
배점 6점	6점	4.5점	3점	1점
배점 8점	8점	6점	4점	1점
배점 10점	10점	7.5점	5점	1점

② 평정요소별 가중치는 없음

- 모든 평정항목에서 만점(수)을 받으면 총 100점

③ 검열대상 민방위대의 독창적 활동이 있을 경우, 별도 평가하여 가산점 추가 가능 → 총 배점의 3%범위 내에서 가산 가능

④ 각 민방위대별 특성에 따라 일부 평정요소가 맞지 않을 경우, 검열관이 현지 실정에 따라 평정요소를 적절히 조정(재구성)하여 평가

2015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직장)

(민방위대명 : ○○민방위대)

분야별	검 열 기 준	배점	평점	평가의견
총 계 (100)		100		
편성 · 운영 (20)	• **민방위대 편성 · 운영** - 편성의 적정 여부(누락여부 등) - 부서별, 기능별 제대 편성의 적정여부 • **자원관리** - 신분변동자 등 기간 내 통보 여부 - 민방위대원 소속 및 임무고지 횟수	8 (4) (4) 12 (6) (6)		
교 육 (20)	• **교육운영 실태** - 자체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교육훈련출석부와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여부 • **교육기반 구축** -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 활용실태 - 교과목 편성의 적정성(안보 및 화생방 필수) • **기관장 관심도** - 교육 시 기관장 참석여부	8 (4) (4) 8 (4) (4) 4 (4)		
동 원 (16)	• **동원 대비태세 및 활동 적절성** - 비상연락망 정비 - 유관기관 공조 및 지원체제 구축(연2회 확인 여부)	16 (8) (8)		
훈 련 (20)	• **비상소집 훈련** - 대원의 소속 및 임무숙지 상태 - 비상소집 후 교육훈련 실시 여부 • **민방공 대피훈련** - 적법절차에 따른 훈련 이행여부 • **재난훈련** - 훈련참여 실태(계획대비 실적) - 기관장의 현장훈련 참여 및 훈련관심도	8 (4) (4) 4 (4) 8 (4) (4)		
시설 · 장비 (16)	• **비상급수시설 관리** - 정기점검 및 수질관리상태 여부(상, 중, 하) • **비상대피시설의 관리 실태** - 유지관리, 청소상태 등 청결여부 • **화생방 장비관리** - 방독면 관리 실태 - 방독면 자체확보(시군구 자체예산) 실적 - 화생방분대 장비확보	4 (4) 4 (4) 8 (2) (2) (4)		
수범 사례 (가산점)	• **수범 사례** -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어서 본받아 배울만한 사례	3		
건의 사항	-			

<검열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검열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귀하

< 점검표 작성 요령 >

① 각 평정요소(항목)는 '최우수'·'우수'·'보통' 및 '미흡'의 4단계로 평가

구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점	2점	1.5점	1점	0.5점
배점 4점	4점	3점	2점	1점
배점 6점	6점	4.5점	3점	1점
배점 8점	8점	6점	4점	1점
배점 10점	10점	7.5점	5점	1점

② 평정요소별 가중치는 없음

- 모든 평정항목에서 만점(수)을 받으면 총 100점

③ 검열대상 민방위대의 독창적 활동이 있을 경우, 별도 평가하여 가산점 추가 가능 → 총 배점의 3%범위 내에서 가산 가능

④ 각 민방위대별 특성에 따라 일부 평정요소가 맞지 않을 경우, 검열관이 현지 실정에 따라 평정요소를 적절히 조정(재구성)하여 평가